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

정책실명제 등록번호	2015-41	담당부서 작성자	(안전총괄과 / 안전관리담당) (양정용/940-3632)
정 책 명	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제정		
사업개요	 ○ 추진배경 - 군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안전도시 사업의 원할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○ 추진기간: 2014. 10. ~ 2014. 12. 31 ○ 총사업비: 해당사항없음 ○ 주요내용: 15조 -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 -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정함(안 제2조~제4조) -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사항, 위탁운영에 관하여 정함(안 제5조~제7조) - 안전도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~제11조) -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 		
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	 추진경과 - 2014. 10월: 조례제정 방침 결정 - 2014. 10월: 조례제정 사전심사 의뢰 - 2014. 10~11월: 조례제정(안) 입법예고 - 2014. 12. 31. : 조례제정 공포·시행 □ 사업관련자 현황 - 입안자: 지방행정주사보 박경순 - 검토자: 안전관리담당주사 신현슉, 안전총괄과장 최종승, 부군수 장민철 - 결재자: 군수 이홍기 		